#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33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 박덕흠 • 박상웅 • 성일종

이헌승 · 서천호 · 김소희

이양수 • 고동진 • 장동혁

윤영석·강대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의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 입하지 아니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 해에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난 7년간 개에 물린 환자가 병원으로 구급 이송된 건수는 총 1만 5692건으로 이르고 있음.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가 지정한 맹견 5종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는 사냥의 본성이 강하여 목줄, 입마개의 착용만으로 그 공격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상

시적으로 통행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그 주변까지도 맹견의 접근을 금 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을 발견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맹견을 발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39조제1항 및 제97조제5항제7호의2ㆍ제7호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맹견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의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
- 4.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출입이나 접근이 금지된 장소 등에 출입하 거나 접근한 맹견
- 제97조제5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7의3.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거나 접근하게 한 소유자등 제101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혅 행 아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제3호에 해 당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 내에 맹견이 접근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 | 3. -----제2조제1 호에 따른 초등학교 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 교 및 특수학교 3의2. 「초·중등교육법」 제2 <신 설> 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제39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 제39조(신고 등)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 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관서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포함한다)-----

1.·2. (생략) <u><신 설></u>

<신 설>

② ~ ④ (생 략) 제97조(벌칙) ①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 8. ~ 12. (생략)
- ⑥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3.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 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
- 4.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출입 이나 접근이 금지된 장소 등 에 출입하거나 접근한 맹견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 (5) -----
- 1. ~ 7. (현행과 같음)
- 7의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 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 7의3.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 을 출입하거나 접근하게 한 소유자등
- 8. ~ 12.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삭 제> 맹견의 소유자등

3. (생략)

4.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5. ~ 18. (생 략)

③ ~ ⑤ (생 략)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 1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